

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98호
의결 년월일	2008. 9. 10 (제146회)

제안년월일 : 2008. 9. 3.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□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이 전부개정(법률 제8423호, 2007. 5. 11. 공포·시행)되고,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(대통령령 제20306호, 2007. 10. 4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,
-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으로 조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함.(안 제1조)
 - 「지방자치법」 제54조 → 제62조

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62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“9인이내”를 각각 “9명 이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10인이내”를 “10명 이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11인이내”를 “11명 이내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제1호나목 중 “관한”을 “속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기획재정위원회

- 가. 보좌기관 중에서 공보실·감사실·옴부즈만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나. 기획재정국·경제문화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다. 사업소 중에서 시립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

3. 행정복지위원회

- 가. 총무국·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나. 직속기관 중에서 원미구보건소·소사구보건소·오정구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

4. 건설교통위원회

- 가. 환경수도국·도시국·건설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나. 사업소 중에서 교통정보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

제4조제1항 본문 중 “위원은 하나”를 “부천시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은 하나의 상임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의회운영위원”을 “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 3명 이내로 구

성한다.

제5조제1항 본문 중 “날로부터”를 “날부터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폐회기간중”을 “폐회기간 중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전임자의 잔임 기간”을 “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”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폐회중”을 “폐회 중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수개의 상임위원회”를 “여러 상임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의회의 의원”을 “의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”를 “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되,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위원중”을 “위원 중에서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규정”을 “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한다.

제11조의2 중 “출석위원중”을 “출석위원 중”으로 한다.

제12조 중 “위해”를 “위하여”로 한다.

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3조(준용규정)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·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부천시의회 회의 규칙」을 준용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제62조에 따라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상임위원회 설치)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의회운영위원회 <u>9인</u>이내 2. 기획재정위원회 <u>9인</u>이내 3. 행정복지위원회 <u>10인</u>이내 4. 건설교통위원회 <u>11인</u>이내 	<p>제2조(상임위원회 설치)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-----<u>9명</u> 이내 2. -----<u>9명</u> 이내 3. -----<u>10명</u> 이내 4. -----<u>11명</u> 이내
<p>제3조(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) ① · ② (생략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(생략) 나.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다. (생략) 2. 기획재정위원회 : 공보실, 감사실, 읍부즈만, 기획재정국, 경제문화국, 사업소중 시립도서관 소관에 관한 사항 3. 행정복지위원회 : 총무국, 주민생활지원국,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 4. 건설교통위원회 : 도시국, 건설교통국, 환경수도국, 사업소 중 	<p>제3조(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-----<u>속하는</u>-----다. (현행과 같음) 2. 기획재정위원회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보좌기관 중에서 공보실 · 감사실 · 읍부즈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. 기획재정국 · 경제문화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. 사업소 중에서 시립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3. 행정복지위원회

현행	개정안
<p>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<u>전임자의 잔임 기간</u>으로 한다.</p> <p>제6조(상임위원장)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(이하 “상임위원장”이라 한다) <u>1인</u>을 둔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<u>폐회중</u>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</p> <p>제7조(특별위원회) ① 의회는 <u>수개의 상임위원회</u>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<u>의회는</u>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</p> <p>④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</u>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⑤ (생략)</p> <p>제8조(특별위원회 위원장) ① 특별</p>	<p>② -----<u>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</u>----.</p> <p>제6조(상임위원장) ① ----- ----- -----<u>1명</u>-----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<u>폐회 중</u>-----.</p> <p>제7조(특별위원회) ① -----<u>여러 상임위원회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의원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④ <u>제1항에 따라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특별위원회 위원장) ① 특별</p>
<p>제8조(특별위원회 위원장) ① 특별</p>	<p>제8조(특별위원회 위원장) ① 특별</p>

현행	개정안
<p>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.</p>	<p>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되,----- -----.</p>
<p>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<u>위원중</u>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	<p>② ----- -----<u>위원 중에서</u>----- -----.</p>
<p>③ (생략)</p>	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조(위원회 선임) ① (생략)</p>	<p>제9조(위원회 선임) ① (현행과 같음)</p>
<p>② <u>특별위원회</u> 위원은 제1항의 <u>규정</u>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.</p>	<p>② <u>특별위원회의</u> 위원은 제1항----- -----.</p>
<p>제11조(간사)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.</p>	<p>제11조(간사) ① ----- 1명-----.</p>
<p>②·③ (생략)</p>	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1조의2(직무대리) 위원장과 간사가 동시에 사고가 있는 때에는 <u>출석위원중</u>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.</p>	<p>제11조의2(직무대리) ----- ----- --<u>출석위원 중</u>----- -----.</p>
<p>제12조(소위원회)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전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</p>	<p>제12조(소위원회) ① ----- -----<u>위하여</u>----- -----.</p>
<p>② (생략)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3조(준용규정) 이 조례에 규정 <u>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·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.</u></p>	<p>제13조(준용규정) 이 조례에 규정 <u>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·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부천시의회 회의 규칙」을 준용한다.</u></p>